## 2023년 진안군 청원경찰 채용계획 공고

2023년 진안군 청원경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7일

진



# 1 채용개요

채용분야	채용인원	담당업무	근무예정부서
청원경찰	4명	- 중요시설에 대한 순찰, 방호, 경비 - 민원인 안내 업무 등 대민업무	본청, 직속기간 주요사업장 등

# 2 채용근거

○「청원경찰법」제5조(청원경찰의 임용 등)

○ **(채용사유)** : 결원(당연퇴직)

○ **(채용방법)** : 자격제한 공개채용

### 3 응시자격

### 1. (응시연령)

- 18세이상(2005.12.31. 이전출생자)인 자로서, 「청원경찰법」제10조 6(당연 퇴직 : 60세)에 해당하지 않는자
- 2. (성별)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인자)
- 3. (거주지 제한)
  -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안군으로 되어 있는 자
    - ※ 단,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함

### 4. (신체조건)

- ○「청원경찰법 시행규칙」제4조(임용의 신체조건)의 조건을 갖춘자
  -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사람
  - 시력(교정시력 포함)은 양쪽 눈이 각각 0.8 이상인 사람

### 5. (근무요건)

○ 주·야간(평일, 토요일 및 공휴일) 교대근무 등 근무가 가능한 사람 ※ 근무요건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### 6. (결격사유)

○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#### <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>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  -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# 4 시험일정

○ 공고일 : 2023. 6. 7.(수) ~ 2023. 6. 14.(수)

시험명	응시원서 접수		시험일정		
시험경 	기간	방법	구분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2023년 진안군 청원경찰 채용시험	2023. 6. 12.(월) ~ 6. 14.(수) 09:00 ~ 18:00 (12:00~13:00 및 주말·공휴일 제외)	<b>방문</b> <b>접수</b> (우편·대리접수 불가)	서류전형 (1차시험)	2023. 6. 16.(금)	2023. 6. 16.(금)
			필기시험 (2차시험)	2023. 6. 24.(토)	2023. 6. 24.(토)
			면접시험 (3차시험)	2023. 6. 28.(수)	2023. 6. 28.(수)

- 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 공고 예정
- ※ 서류·필기·면접 등 합격자 발표 공고사항은 진인군청 홈페이지 게시(소통/참여→군정소식→채용/시험정보→청원경찰)
- ※ 접수처 :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, 진안군청 2층 행정지원과

# 5 시험방법

#### 1. (서류전형)

-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 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  - 거주지, 응시연령, 신체조건(채용신체검사서) 등
- 2. (필기시험) ※ 100점 만점, 과목별 20문항(4지 택1형)

시험명	과목	문항수	시험시간	비고
 2023년 진안군 청원경찰	일반상식	20문제	40분 (10:00 ~ 10:40)	고등학교 학력 수준
채용 필기시험		20문제		

- 대상자 : 서류전형(1차 시험) 합격자
-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.5배수를 고득점자 순 으로 합격자 결정(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)
  - ※ 1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
-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,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
  - ※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

#### 3. (면접시험)

- 대상자 : 필기시험(2차 시험) 합격자
-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

【 면접평정요소 : 5개항목 】

- 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-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· 품행 및 성실성
-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### 4. (최종합격자 결정)

- 필기시험의 성적순위와 관계없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
  - ※ 불합격기준
    - ·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한 경우
    - ·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한 경우

#### 5. (우대요건)

-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우대조건 적용, 아래  $(1) \rightarrow (2) \rightarrow (3)$ 순으로 적용
  - (1) '상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동점자 중에서 우대조건을 적용하여 우선 선발.(※우대조건 중복시 1개만 적용)

구분	대 상
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
	「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
취업지원	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0조
대상자	「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
	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 제9항
	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
지소득층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	

- (2) 우대조건 적용시에도 동점자 발생 시, 「중」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.
- (3) 「중」의 개수 동점자 발생 시, 재면접 실시
- (4) 우대요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증빙서류(원본)을 서류접수 시 제출
- ※ 기간 내 미제출 시 우대요건 적용 받을 수 없음

# 6 응시자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(서식1, 사진 부착)
  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(3.5× 4.5cm)사진 부착
- 자기소개서 1부(서식 2)
-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(서식 3)
- 공정채용확인서 1부(서식 4)
- 채용 신체검사서 1부(서식 5) ※ 진안군 의료원 발급가능(2일 소요)
-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사항(전부) 및 병역사항 기재) 1부 ※ 공고일 이후 발급
- 우대요건 증빙서류 1부(우대요건 대상자에 한함)

## 7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제출서류 미비, 연락불능,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 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  - ※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
- 합격자 통지 후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, 「청원경찰법」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내 반환 신청(서식6)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.
  - ※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: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부터 30일 이내
-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 될 수 있으며,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
- 공고한 내용은 채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(https://www.jinan.go.kr)에 공고합니다
-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임용취소 등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행정지원과 행정팀(063-430-223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